

성신교정 상대평가 내규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의 학업성적 상대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상대평가)

- ① 학부 및 대학원의 학업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.
- ② 상대평가에 의한 성적등급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학부(수강인원 20명 이상)
 - A등급 : 30% 이내
 - A+B등급 : 70% 이내
 - C등급 이하 : 30% 이상
 2. 학부(수강인원 11~19명)
 - A등급 : 30% 이내
 - B등급 이하 : 70% 이상
 3. 대학원(단, 교회음악대학원 제외)
 - A등급 : 50% 이내
 - B등급 이하 : 50% 이상
- ③ 제2항의 비율에 의한 인원 산출 시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반영한다. (예: 81명 × 30% = 24.3명 ⇒ 25명)
- ④ 추가시험, 성적 이의 신청에 의한 성적 정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성적등급비율을 맞출 수 없는 경우에는 교학처장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정할 수 있다.

제3조(상대평가 제외 과목)
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목은 상대평가에서 제외한다.
 1. 교직과목
 2. 수강인원 10명 이하 과목
- ② 실습과목에 한하여 상대평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개강 2주전까지 상대평가 제외 과목 신청을 하여야 하며, 교무위원회에서 승인 여부를 판정한다.

제4조 [삭제 2009. 2. 19]

부 칙

- ① 이 내규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이 개정 내규는 2009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- ③ 이 개정 내규는 201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하되, 2015학년도 1학기 성적평가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개정 내규(제2조, 제3조)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개정 내규(제2조)는 2020년 6월 12일부터 시행하되, 2020학년도 1학기 성적 평가부터 적용한다.